

캐나다의 산업의 제도

편집실

캐나다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천연자원으로 둘러싸인 국토면적 998만 km²(세계2위), 인구 2,600만명인 나라로서, 산업구조는 광업,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도태사태를 맞은 산업도 있다.

보건관련제도는 주 단위로 규정하고 운영되며, 주단위로 일원화한 정부관여하의 국민개보험제도가 실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의 제도에 있어서도 주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온타리오주, 알버타주, 퀘백주를 예로 살펴본다.

1. 산업의 계약

각 주의 규정에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산업의 선임에 대한 의무화 규정은 없다.

합중국과 같이 기업의 책임으로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선임하는 형태를 취한다. 선임과 관련된 법규는 주 단위로 제정되어 운영하며, 알버타주와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임용된다.

퀘백주의 경우에도 선임의무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지역병원센타 지역의료부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는 의사에게 그 직책을 부

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에 있어서 위생안전위원회는 4년간을 그 기간으로 정하고, 또 노동안전위생협회 및 지역의료부국은 2년간을 유효계약기간으로 해서 평가를 받도록 정해져있다.

온타리오주는 선임에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는 없다. 퀘백주는 산업의가 위생안전위원회에 의해서 선임되며, 이 위원회는 경영자대표 및 노동자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해고에 있어서는, 위생안전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나 경영자가 위원회에 요구해서 결의하여 결정하고, 또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단체든가 노동자 10%가 산업의 해임을 민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자격의 결여 및 과학적 능력부족, 태만, 과실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온타리오, 퀘백주 모두에는 기업에 속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기업외의 산업의가 소속하는 관계기관이 있는데 이중에는 지역의료센타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각 주에서 현행의 노동안전위생법이 시행된 것은 1970년대이며, 산업보건서비스에 관계되는 내용은 주마다 다르다. 그리고 산업의 활동으로 혜택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온타리오주가 30%, 퀘

백주가 약간 더 높은 %로 추정된다.

2. 산업의 실태

산업의에 대한 법적자격은 없으나 전문야의 전문의 인정제도를 갖고 있는 왕립학회에서 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 산업의학평의회는 연수실시 및 경험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산업의학전문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졸업전 교육으로서는 산업의학교육이 모든 의학부에서 수시간동안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졸업증서와 의사자격을 갖추면 충분하고 산업의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다.

캐나다에서는 산업위생학부를 갖추고 있는 대학으로는 터론텐대학, 맥매스터대학, 알버타대학이 있으며, 맥길대학에는 대학원 학부가 있어서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맥길대학 과정에는 산업의(의학) 연수에 많은 의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의사뿐 아니라 다른 학부출신자도 많다. 이 과정은 1년간의 집중강의와 연습과제가 있으며, 분산하여 단위취득도 가능하다.

알버타대학은 왕립학회가 승인한 산업의학레지던트 코스가 있으며, 산업의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의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인정증서를 수여받은 경우이다. 퀘백주에서는 지역위생국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주립병원 근무의사에 준한 표준 보수가 결정되는데 기업간의 격차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산업의의 직위로서는 부장급이 일반적이며 직위급여에 수당이 가산된다. 일반적으로 임상의보다 총수입이 적으나,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제경비가 적기때문에 실제수입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수는 확실한 통계수치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약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200명이 상근, 300명이 비상근으로 추정된다.

3. 산업의의 활동 내용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산업의의 주요 업무는 직업관련질환의 관리, 그 원인에 대한 대응, 보상(Compensation)에 대한 대응으로 공통적이다.

건강관리 : 건강진단 실시는 산업의계약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한 종업원 개인의 건강지도, 사후관리, 대책지시는 대부분 업무에 포함되며, 건강상담 및 교육도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증진활동(Fitness program)에 관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실시방법은 각기 다양하다.

작업관리 : 기업의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주로 작업관련질환의 방지를 위한 개선업무에 관여한다. 주요업무중 하나로서 적정배치에 관한 업무이며, 노동관련질환의 방지, 진단, 판정, 보상수속 등은 모든 주에서 산업의의 기본업무로 채택되고 있다.

작업환경관리 :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안전사용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수집과 평가를 주체적으로 하거나 관여한다.

총괄관리 : 경영자의 정책에 대한 조언과 실제의 개선 또는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일에 관여한다. 다만 기업내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

다. 퀘백주에서는 안전위생위원회를 통해서 의견과 대응안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순시 또는 시찰에 대해서는 퀘백주외의 법규에서는 산업의가 정기적으로 직장을 순시하고 노동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현장의 상황은 시간대에 따라 평가하기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

산업의는 치료를 주체로 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급성호흡기질환, 경도의 외상, 일부 만성질환 치료를 해주는 클리닉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직업관련질환이외에 장기적으로 특정한 치료를 하는 일은 드물다.

4. 기타사항

산업의 선임은 제도적 범주보다도 전문성, 직무내용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의 산업의의 기업내 직위로서 가

장 높은 위치는 부서장이며 이 경우는 수입면에서도 높다.

한편, 산업의에 대한 업무평가가 있는데, 경영자로부터는 미국과 같이 산업보건활동의 비용대 성과율, 사고, 질병발생상황, 목표와 달성을, 노동자로부터의 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노동자로부터는 교육내용, 개선지도, 건강지도시의 내용이나 태도 등이 문제되는 등의 엄격한 경우도 때로는 있다.

5. 맷음말

캐나다는 노동위생관련법규에 관해서는 주단위의 독립성이 강하다. 산업의의 선임, 의의, 교육에 대한 것은 아메리카합중국과 공통성도 많으며, 산업보건정보의 시스템화, 상호이용도 추진되고 있다.

반면 국민개보험제도, 자동차사고배상보험의 무과실원칙은 합중국과 큰 차이가 있다. 퀘백주에서는 프랑스쪽에 가까운 측면도 있으며, 또 앞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합중국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을지도 모른다.

